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22년 11월 21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2년 11월 4일

나. 발의자: 박성호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2년 10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2. 11. 21.)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이유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본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 삭제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현행 제4조)
-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현행 제5조)
-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현행 제6조)
- 가족 채용 제한(현행 제7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현행 제8조)
- 공용물의 사적 수용·수익의 금지 등(현행 제15조)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현행 제23조)

나.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 현행 조례 제7조(가족 채용 제한) 삭제로 ‘산하기관’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관련 조항의 ‘산하기관’ 용어를 정비함
- ‘전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가(轉嫁)’로 한자 병행 표기
(안 제17조)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정비

- ‘채용·승진·전보 등’에서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으로 정비
(안 제13조)

라. 조항 삭제에 따른 관련 서식 삭제(별지 제1호 서식~제4호 서식,
제12호 서식)

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설날·추석 기간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두배(10만원→20만원)로 상향(안 별표 1)

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할 수 있도록 정비(안 별표 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4.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오숙)

가. 개정취지

-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22.01.05.)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 본 조례의 근거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삭제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안 제4조),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안 제5조),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안 제6조), 가족 채용 제한(안 제7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8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안 제15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안 제23조)에 관한 사항 삭제로

○ 이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사항이 상위 법률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¹⁾에 규정됨에 따른 조치로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율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령 개정 시마다 상위 법령의 취지와 내용이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현행 조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간 중복 규정 비교〉

관계 규정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이해충돌 방지법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제4조	제5조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	제8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6조	제10조
가족 채용 제한	제7조	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8조	제12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15조	제13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제23조	제9조

○ 또한 농수산가공품의 설날·추석 가액 범위를 2배로 인상(안별표 1)하는 것으로, 이는 2021년 12월 16일에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의 체계정당성²⁾의 원칙에 따라 통일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2) 체계정당성: 법규범을 입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면, 동일하거나 상이한 법규범 사이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부패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각종 법률적 조치들이 마련되면서 법령과 조례 간 혼선을 방지하고 체계를 일치시킨다는 점과 청탁금지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참 고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통보 및 협조 요청

1.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판단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2022.6.2.) 되었습니다.

3. 또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2022.6.14.)하여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및 신고 서식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4. 이에,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별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해당 개정사항이 귀 기관의 자체 행동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절차 등을 진행해 주시길 요청 드리며, 그 반영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 참고자료 1부.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지방의회

행정주사보 박소망 諸동김령과장 직 전결 06/15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원로 20, 경부세종청사 7동 (아 / http://www.acrc.go.kr
전화 044-200-7670 / 전송 044-200-7942 / qor.thakd7@korea.kr / 비공개

협조자

시행 행정법령-6074 (2022.06.15.) 접수 구의회사무국-3711 (2022.06.15.)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원로 20, 경부세종청사 7동 (아 / http://www.acrc.go.kr
전화 044-200-7670 / 전송 044-200-7942 / qor.thakd7@korea.kr / 비공개

공무원 행동강령		
연번	행위기준	개정여부
1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처리	유지
2	• 특혜의 배제	유지
3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유지
4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유지
5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유지
6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유지
7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유지
8	•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유지
9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유지
10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유지
11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유지
12	•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유지
13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유지
14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유지
15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유지
16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17	•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18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삭제
19	• 가족 채용 제한	삭제
20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21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삭제
22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삭제
23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삭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연번	행위기준	개정여부
1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유지
2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유지
3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유지
4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유지
5	•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유지
6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유지
7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유지
8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유지
9	•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유지
10	• 국내외 활동 제한 등	유지
11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유지
12	• 영리행위의 신고	유지
13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유지
14	• 성희롱 금지	유지
15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16	•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17	•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삭제
18	• 가족 채용 제한	삭제
19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20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삭제
21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삭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 이권개입 · 알선 · 청탁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 · 출연 · 보조를 받는 기관 · 단체(재출자 · 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 · 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 출연 · 보조를 받는 기관 · 단체(재출자 · 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 · 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 동의 · 추천 · 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 · 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 · 임명 · 위촉하는 기관 ·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② 생략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 · 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이하 생략)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 나. 수산물: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 2.~12.(생략)
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 14.(생략)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